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7월 12일, 박희승의원등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7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4. 8.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4. 8. 23.)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4. 8. 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현행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소득·재산이나 분할납부 승인 제도 등의 예외규정을 모두 적용

배제하고 있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19헌마1165)

이에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제109조제10항을 개정하여 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급여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1) 개정안의 내용

- 현행법 제109조제10항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일로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한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내국인등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받았음.
-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서, 보험료를 체납한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해서도 내국인에 대한 체납 규정인 제53조를 준용하도록 하되,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2019헌마1165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요 내용

- 헌법재판소는 2023. 9. 26. 내국인등과 달리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10항(이하 ‘보험급여제한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음.
-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제한을 내국인등과 달리 실시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보았으나, 현행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음.
 -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외국인의 경우 보험료의 1회 체납만으로도 별도의 공단 처분 없이 곧바로 그 다음 달부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보험료가 체납되었다는 통지도 하고 있지 않은데, 절차적으로 보험료 체납을 통지하는 것은 당사자로 하여금 착오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잘못된 보험료 부과 또는 보험급여제한 처분에 불복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지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임.
 -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내국인과는 달리 과거 보험료를 납부해 온 횟수나 개별적인 경제적 사정의 고려 없이 단 1회의 보험료 체납만으로도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체납한 보험료를

사후에 완납하더라도 예외 없이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는 평균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외국인에게는 불측의 질병 또는 사고·상해가 발생할 경우 건강에 대한 치명적 위험성에 더하여 가족 전체의 생계가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할 수 있음.

-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에 당연가입하도록 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한 탈퇴를 불허하는 것은 단지 내국인과의 형평성 제고 뿐 아니라, 이들에게 사회연대원리가 적용되는 공보험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정책적 효과도 가지게 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등과 달리 취급한 것임.

-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건의 경우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데에 여러 가지 선택가능성이 있고, 입법자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보험급여제한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2025년 6월 30일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

(3) 검토의견

-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현행법 제109조 제10항을 개정하여 국내체류 외국인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에 관련 절차와 내국인에 대한 보험료 체납 관련 절차를 원칙적으

로 동일하게 규정하되,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참고로 현행법¹⁾ 및 시행령²⁾에 따르면 현재 내국인의 경우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1)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2.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

④ 공단은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2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에 받은 보험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1.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82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 다만, 제82조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①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6회를 말한다.

③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재산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9. 6. 11., 2021. 12. 31., 2024. 5. 7.>

1.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이 336만원 미만이고, 그 세대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하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450만원 미만일 것. 다만, 가입자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각각 공단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소득 및 재산의 확인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보험급여제한 조항의 위헌성이 보험급여제한을 실시하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통지절차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하면서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제한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규정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보건복지부 의견

-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위헌요소 해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내·외국인의 보험료 체납시 급여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은 악용사례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 악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미애 의원)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이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의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8.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하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9조제10항 및 같은 조 제11항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9조제10항 본문 중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이 경우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 제109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 ⑨ (생략) ⑩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보험료를 <u>채납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납일부터 채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u> <u><단서 신설></u>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 ----- ----- ----- <u>채납한 경우에는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u><후단 삭제> 다만,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u>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 ⑨ (개정안과 같음) ⑩ ----- ----- ----- -----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채납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납일부터 채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u> <u><단서 삭제><후단 신설> 이 경우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은 적용하지 아</u>

	<u><신 설></u>	<u>니한다.</u> <u>⑪ 제10항에도 불</u> <u>구하고 체류자격 및</u> <u>체류기간 등 국내체</u> <u>류 외국인등의 특성</u> <u>을 고려하여 특별히</u> <u>규정해야 할 사항은</u> <u>대통령령으로 다르</u> <u>게 정할 수 있다.</u>
--	--------------------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0항 전단 중 “체납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 ⑨ (생 략)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 이 보험료를 <u>채납한</u>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 납일부터 채납한 보험료를 완 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 ----- ----- ----- <u>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기간 이상 채납한</u> ----- ----- ----- ----- ----- ----- ----- -----.
<u><신 설></u>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체류 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 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